

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(보통예금) 상품설명서

- 본인은 중국농업은행과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(보통예금)을 거래함에 있어 은행 직원과 상담하여 아래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주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- 본인이 가입하는 금융상품의 예금자보호여부 및 보호한도(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)에 대하여 중국농업은행 서울지점으로부터 설명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고객확인 : 20 (서명/인)

이 설명서는 은행 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, 실제 계약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및 예금거래 기본 약관이 적용됩니다.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약관이,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예금증서가 교부됩니다.

1 상품 개요 및 특성

- 상품명 :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(보통예금)
- 상품 특징 :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예금잔고 범위 내에서 수시 입출거래가 가능한 상품

2 거래 조건

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증서에 따릅니다.

| 구분 | 내용 |
|--------------|--|
| 가입자격 | 제한없음. |
| 가입금액 | 제한없음. |
| 기본 이자율 | KRW : 연 0.1% USD : 연 0.05% CNY : 가입일 당시 당행 자금부 고시 이율 |
| 이자계산 기준일 | 매년 4월, 10월 말일. |
| 가입 및 해지방법 | 지점방문. |
|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| - 계좌에 압류, 가압류,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. - 예금잔액증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. |
| 예금 해지시 불이익 | 해당없음. |
| 예금자 보호 여부 | 이 예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,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,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"최고 5천만원"이며,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. |
| 위법계약해지권 | 당행이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한 경우,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불공정 영업 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, 금융소비자는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47조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및 위약금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. |

3 유의사항

- 본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당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제공되는 자료로서, 중도에 금액, 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4 기타

-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3788-3906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 당행에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영업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, 기한 연장시 이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진행상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. 또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(국번없이 1332)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